

■ 판례 동향

「관세법」 제31조의
적용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해설

■ 품목분류 동향

제9032호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개정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가오는 EU CBAM 전환기간 도래,
관세사 역할은?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이소영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6월 17일(통권 제2087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다가오는 EU CBAM 전환기간 도래, 관세사 역할은?

06 Weekly News**관세행정실무해설**

- 18** 관세행정안내
임가공 제품에 대한 해외 임가공 감세 또는 한·ASEAN FTA 적용 가능 여부
- 24** 질의응답사례
고철의 품목분류

판례동향

- 26** 관세판례해설
「관세법」 제31조의 적용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해설

품목분류동향

- 33** 품목분류해설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 48** 세번 바로잡기
안구세정제

49 상식 밖의 상품학

양질의 단백질 ‘유장’

최신개정법령**52 총리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6 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57 입법예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다가오는 EU CBAM 전환기간 도래, 관세사 역할은?

관세발전포럼서 “기존 관세분야 업무에서 CBAM 컨설팅 등 비관세 분야로 확장 필요” 제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이 올해 3분기 도래한다. EU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동등하도록 추가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는 모든 非EU 국가(제3국, 역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수소 등이 EU 국가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된다.

현재까지 시범 기간이어서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아도 됐지만, 올해 10월부터는 CBAM 전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환기간이 도래하면, EU 수입업자가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CBAM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제품당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CBAM을 대응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자사의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거나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공정과 설비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환산 톤당 5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ESG 규제로 EU의 CBAM(48.3%)이라고 응답했으며, 국내 기업의 규제 인식 및 대응수준이 미흡하고, CBAM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과 전문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이에 수출업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관세선에서 수출입통관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비관세장벽에 대한 컨설팅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세동우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6월 13일 ‘제4회 관세발전포럼’을 열고,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U CBAM이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EU로 수출하는 기업을 관세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세사의 역할’을 발표한 관세법인 선율 남성철 관세사는 탄소전환이 무역에 미칠 영향과 해당 제도에 대한 관세사의 역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남 관세사는 EU CBAM에서 관세사 업계가 수출상품에 체화된 탄소배출량 산출과 검증기법 등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 관세사는 CBAM에서 관세사의 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수출자 CBAM 대행, ▲탄소배출량 이력관리, ▲수입비즈니스 모델, ▲현지지원 모델, ▲CBAM 추적전산화, ▲교육사업 등 6가지를 꼽았다.

① 수출자 CBAM 대행

먼저 CBAM이 도입됨에 따라 수출자는 CBAM 대상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EU 수입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수출통관 과정에서 관세사가 대행하는 모델이다.

② 탄소배출량 이력관리

이러 수출자는 전구물질(Precursor, 원료물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취해야 하는데 거래 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보 수취가 누락되는 경우 탄소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확인서와 같은 ‘탄소배출량 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탄소배출량 확인서 발급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출도 가능하다.

③ 수입비즈니스 모델

또 수출자는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국외 공급업체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수취가 필요하지만, 국내 업체에 비해 국외 업체로부터 정보를 수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 탄소배출량 보고가 불가능할 수 있다.

남 관세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와 비슷한 개념의 ‘탄소배출량 증명서 제도’를 도입해 탄소배출량 증명서 발급 및 수취한 증명서 진위확인을 관세사가 대행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④ 현지지원 모델

현지지원 모델은 현재는 수출자가 탄소배출량 수취·산정·보고하고, 수입자가 탄소배출량 신고를 하는 구조로 업무가 이뤄진다. 이때 현지진출을 통해 해외 탄소배출량 입력 대행 업체가 탄소배출량을 수취·산정·보고·신고를 일원화해 대행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업무 부담 감소 및 구조 단순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⑤ CBAM 추적 전산화

이와 함께 CBAM 전체 단계별 추적 및 데이터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공·민간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관세사의 자문 용역 제공과 시스템 개발 이후 실제 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용역 제공이 가능하며, 시스템 활용에 따라 장기적인 배출량 변동에 대한 보고서 제공 등 리스크 검토용역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⑥ 교육사업

아울러 CBAM 산정 및 보고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업체별 개별 컨설팅에 대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이 심화될 수 있어 수출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교육사업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남성철 관세사는 “현재까지 제안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관세사의 역할이 관세에서 비관세로 확장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관세에서 비관세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비관세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하세은 기자 |

산업·에너지 R&D 연구장비 도입, 5개월 → 2개월로 단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 … 6월 13일부터 시행

산업과 에너지 연구개발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기존 5개월에서 2개월로 도입기간이 단축된다. 연구자들이 신속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에너지 R&D 수행과정에서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중소형 연구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 심의에만 2개월, 구매절차 진행에 3개월 등 총 5개월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2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264개 연구기관에서 911개의 연구장비가 도입됐다.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요령에 따르면, 먼저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개월이 걸리던 것을 1개월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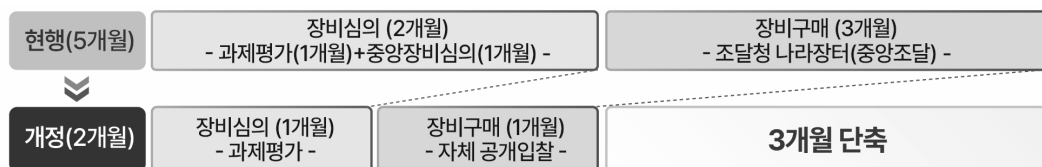
또한 장비 구매도 그동안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중앙조달계약 방식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3개월 이상 소요됐던 구매 기간이 1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은 이번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6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하구현 기자 |

● 장비연구 도입 절차 간소화 내용 ●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진행

관세청이 수출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FTA 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Made in 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6월 19일)·인천세관(6월 27일)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URL 주소(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6월 13일 전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만 5,247건, 134만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만 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 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했다.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 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만 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000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해 해외 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만 7,574건(44.1%), ▲신발류 1만 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순이었으며, 가전제품이 2021년 393건, 2022년 1,7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만 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552건, 1.8%), 태국(186건, 0.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 관련 단체에 배포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해상운임 상승 대응 위해 신조 컨테이너 7척 투입

정부, '경제관계차관회의'서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 상정

최근 홍해 사태가 장기화하고, 미국의 對中 관세인상 전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월 7일 기준 3184.87을 기록했는데, 올해 3월 중순 이후 9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해상물품 운임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입 해상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선사 HMM을 통해 올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해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미 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컨테이너선 2척) 항로 투입 등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어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할 계획이다.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동시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한 수출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KOTRA·한국무역협회 내 정보제공·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을 이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세은 기자 |

韓·카자흐, 핵심광물·전력산업 등 협력 확대

카자흐스탄과 비즈니스 포럼 개최 … 민간 MOU 24건 체결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핵심광물, 에너지, 무역·투자·금융, 新산업·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2일 한국무역협회가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삼룩카즈나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등 관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SK에코플랜트, 두산그룹 등 50여개 국내 기업 및 기관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로만 스클라르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 무르트 누르틀레우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등 주요 정부인사 및 기업인이 참석했다.

우선 산업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전력산업, 경제공동위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전기차, 반도체, 합금강 제조에 널리 쓰이는 리튬, 크롬, 망간, 희토류, 우라늄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동지질조사, 탐사, 개발, 정·제련 등 각각의 단계별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급망 대화’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 기관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력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간 전력 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의 가스복합화력으로 전환과 노후발전소의 효율화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어 앞으로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에 이어 이번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의 협력체인 공동위원회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양국 기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건의 민간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복합화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플랜트, 노후 전력 현대화, 소형모듈원전(SMR), 가스처리 플랜트 등 5건의 MOU가 체결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복합화력, 재생에너지 등 다수의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지질자원연구원과 SK에코플랜트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와 MOU를 맺고, 리튬 유망광구 탐사와 개발에 협력한다. 앞서 지질자원연구원은 현지 연구기관과 리튬 광구 공동탐사를 진행해 리튬 매장을 확인한 바 있다. 그밖에 자동차 분야 산학 인력양성 협력, 엘리베이터 연구개발(R&D) 파크 조성 등 산업 분야에서 5건, 콘텐츠·헬스케어 등 新산업 분야에서 3건, 금융지원 2건 등에서도 MOU를 체결했다.

| 김성은 기자 |

정부, 우리 기업 수출기업 우려 TBT 해소 총력 대응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우리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유럽연합(EU)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를 비롯해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등 우리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EU,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우리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TBT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해외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당부했다.

한·칠레 간 민간협력 통해 핵심광물 확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 광업부와 함께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6월 11일 개최했다.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올해 5월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에 이어 양국 간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계약 및 투자와 같은 민간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칠레는 작년 4월 ‘국가리튬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국가 주도로 본격적인 리튬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어 핵심광물 주요 수입국인 우리에게도 핵심거점 협력국가다.

우리 정부는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를 12년 만에 재개해 칠레 리튬염호 개발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광미재자원화, 리튬수출기술협력을 제안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칠레 역시 자국의 광물 수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도 칠레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칠레 광업부장관이 직접 우리 기업에 칠레의 주요 핵심광물 정책을 소개하고, 칠레투자청이 리튬염호 프로젝트 및 투자절차 등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지난 한·칠레 자원협력위원회에 이어 이번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됨에 따라 양국 간 핵심광물을 위한 공급망 협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한·칠레 간 핵심광물 소통채널이 활성화된 만큼 광미재자원화, 리튬수출기술협력 등 정부 간 협력과 함께 우리 기업도 칠레의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 하구현 기자 |

한·ASEAN FTA, 현대화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실시

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가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0여 명이, ASEAN 측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ASEAN 국장 등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했다.

한·ASEAN FTA는 2007년 상품협정이 발효됐고, 2009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했으며, 2013년 이후 추가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와 ASEAN이 함께 논의해 오고 있다.

이번 제21차 이행위원회에서는 한·ASEAN 회원국 간 개선 협상 일정, 범위 및 방식,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공동연구 추진, 상품관세양허표(TRS)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의 HS 2017 → 2022 전환 등을 논의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 3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0차 이행위원회에서 FTA 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후속협상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며, ASEAN 측이 국내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산업부·식약처, '제12차 한·EU FTA 상품무역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2일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EU 교역·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달러,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했다.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산업부는 EU 측에서 문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해서 관련 업계와의 소통에 노력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 하세은 기자 |

외교부·중기부, '2024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성료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최한 '2024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이 6월 1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페루, 온두라스, 칠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바 등 중남미 6개국 및 OECD 등 고위인사와 함께 우리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급변하는 국제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한·중남미 간 상생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세션은 '동반성장과 민생경제 강화' 주제로 진행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실질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중남미 지역이 120여년간 우애와 연대의 여정을 함께 해왔으며 ▲1950년 모든 중남미 국가들의 한국전쟁 지원,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남미 9개국과 FTA 체결, ▲지난 2월 한·쿠바 외교관계 수립 등의 주요 이정표를 언급했다.

곤잘레스 올라에체아 페루 외교부장관은 "중남미 지역이 국제경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남미 지역은 한국 산업에 필요한 천연자원 제공을 위해 공급망 강화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과 사회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경제통상 협력을 증진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은 2008년부터 외교부가 주관하는 연례 중남미 최고위급인사 초청 행사로 올해에는 중기부와 공동 주최해 한·중남미 지역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 의료제품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FDAC)과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 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국내 반입 불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다단계판매원 A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돼 있고, 위반 제품은 해외 직구 위해식품 목록에도 등록(2019년 8월)돼 있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식약처는 작년 10월 뉴질랜드産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병(60캡슐)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고, 1병당 10~3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불허 착색료 검출 … 수입 탄산음료 회수 조치

카자흐스탄産 탄산음료에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가 수입해 판매한 카자흐스탄産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 탄산음료)'에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6월 12일 밝혔다.

검출된 성분은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 11. 16.'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에는 5만 9,480kg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 손안'을 이용해 신고하라고 전했다.

| 김성은 기자 |

신속·정확 심사 위해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조직 출범

특허청, 2개과 신설 및 1개과 재편 등 이차전지 심사조직 체계 마련

이차전지 기술은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힌다. 또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최근 주요국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며,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연평균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의 적기 확보를 통한 기술 격차 확대를 위해, 신속한 심사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기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과 신설, 1개과 재편 등 총 3개과 규모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2024.2.19.), ▲'이차전지 분야 민간 전문가 심사관 채용'(2024.5.29.), ▲전담 심사조직까지 출범(2024.6.13.)하며,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체계를 갖춰 초격차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은 이차전지 기술 생태계 전(全) 과정에 맞춰 심사조직 체계를 갖췄다.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인력, 신규 인력을 3개의 이차전지 전담 심사과에 배치해 심사효율과 심사품질을 모두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진용을 갖추으로써,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반도체 특허심사꾸러미(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성과에 힘입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이 같은 특허심사 꾸러미(패키지)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 타 첨단기술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세은 기자 |

● 특허청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개편 관련 ●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인력	45명	83명 (기존 심사관 45명 + 전문가 38명)
조직	1개과 ▶ 차세대에너지심사과	3개과 ▶ 이차전지 소재심사과 ▶ 이차전지 설계심사팀 ▶ 이차전지 제어관리심사팀
기간	약 20개월 소요(2024년)	우선심사 적용 시 2개월

對中 수출 강화 “수출품목 다변화·내수시장 진출 확대해야”

무역협회,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우리 기업이 對中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면 주력 수출품목을 다변화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월 11일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제1교역국으로서 지위가 공고했던 중국과의 무역 구조가 변화를 맞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美·中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반에서 역내 우호국을 중심으로 무역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시아 역내무역비중은 2015년 52.5%에서 2022년 53.6%로 상승했으며 최근까지도 역내무역이 성장 중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국의 역내무역비중은 감소하면서 韓·中 양국의 상호의존도 관계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UN의 국가별 품목별 무역통계(UN Comtrad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2023년 전년 대비 19.9% 감소해 40년만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2023년 對中 무역수지는 1992년 이후 최초로 적자로 전환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2016년 이후 중국은 자급률 제고와 기술수준 향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로부터 중간재·최종재 수입 비중이 감소하고 1차산품 수입이 확대됐다. 또한 중간재 제조 역량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 진입하면서, 수출에서는 고위기술 및 중위기술 중간재 성장이 두드러졌다. 다만 우리나라로의 수출은 중간재 중에서도 원자재·가공품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특징이 보였다.

우리나라의 對中 수입의존도는 2020년 이후 정체된 반면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은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對세계·對中 수입은 모두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對세계 수입 증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對中 수입 확대는 첨단산업 핵심소재인 원자재·가공품 수요 증가에 기인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석유화학·이차전지 관련 원자재·가공품과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위기술 중간재로 양분화되는 현상이 강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경기변동과 자급률 제고의 영향에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 공급업체 중 중국기업의 비중과 우리 기업 및 공급업체의 중국 소재 생산시설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이차전지의 경우 공급업체의 생산설비 소재지 및 본사 소재지에서 중국 비중이 모두 1위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 이후 우리 기업은 국내외 공급업체 수를 확대하고, 對中 투자를 축소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국가 차원에서 원자재·가공품 對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다자협약체에 적극 참여하고, 원자재 가공·제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김성은 기자 |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제품 44% “항산화 성분 기준 미달”

한국소비자원, 프로폴리스 구매대행 소비자 주의해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프로폴리스 식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것이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며 호주, 브라질 등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24년 5월 16일 기준, 국내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식품 전체의 44%가 해외 구매대행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캡슐형 20개,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액상형 스포이드 6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 중 하나로 항산화 기능성 성분이다. 우리나라는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알코올 함량 문제도 있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제품에는 알코올이 함유될 수 있다.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는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 효능을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충남대병원, '환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

관세청이 충남대병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세청의 공식 캐릭터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관세청에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보내준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이번 협약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관, 기업 CEO 대상 관세행정 설명회 … 관세행정 활용 노하우 공유

서울세관은 6월 10일 서울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CEO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구세관, 달라진 관세환급 제도 반영한 '환급신청 길라잡이' 발간

대구세관이 관세환급 신청 실무 매뉴얼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리뉴얼해 발간했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20년 이후 달라진 환급특례법령과 행정규칙 내용을 실무에 맞게 반영하고, 업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게재하는 등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책자는 관세환급 소개는 물론, 간이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환급신청 요령, 유용한 제도 정리, 주요 질의응답 사례, 최근 달라진 환급제도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수출초보기업 및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세관 홈페이지에 게재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임가공 제품에 대한 해외 임가공 감세 또는 한·ASEAN FTA 적용 가능 여부

홍재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ASEAN FTA	
질문	한국産 미역을 태국에 수출해 임가공(미역 줄기 분리 및 절단 가공 등) 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면세 또는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관세법」상 해외 임가공 감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수출입물품의 세번은 동일하나 일차제품의 특성상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 임가공 감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품 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감면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관장이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아울러 FTA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 미역의 세번(제1212.21호)의 한·ASEAN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태국에서 완전생산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돼 태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질의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 상품 및 완전생산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즉 원산지 상품이 돼야 FTA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협정별로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① 완전생산물품, ② 원산지 재료 생산 물품, ③ 불완전생산물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중 완전생산기준은 비원산지 재료(외국산 재료)를 사용함이 없이 오직 당사국(우리나라와 계약국)의 원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그 완전생산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2) 완전생산기준의 적용

이론상 가장 원칙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계약당사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생산되거나

또는 획득될 것을 요구하는 ‘완전생산기준’이지만 농수산물 등 1차 산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은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생산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해 원산지 판정 및 증명을 하게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일반기준’과 물품별 적용이 가능한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어 있고,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생산원칙 등은 ‘일반기준’의 영역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품목별 기준’의 영역에 속해있다.

다만 완전생산기준은 일반기준 외에도 품목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을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그 안에서 완전생산기준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세부적으로 해석하면 협정별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협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때 일방 또는 양당사국(one or both of the Parties)인지 당사국(a Party) 또는 수출당사국(the exporting Party)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완전생산 적용 물품에 누적기준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기준의 완전생산기준에서는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또는 역내)에서 생산돼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생산기준의 적용 목적상 공산품의 생산에 알맞은 ‘제조 또는 생산’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완전생산 간주물품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대상은 광물성·식물성 생산품 등 자연에서 나오는 품목들과 우주 취득 물품, 폐기물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품목들이다.

예를 들어 수산물이나 축산물의 경우 ①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②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③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텃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등에 해당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한·ASEAN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의 원산지 기준은 2가지 방법을 통해 원산지 판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ASEAN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2조(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며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제3조(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그 상품이 제4조(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제5조(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 또는 제7조(누적)에 따라 원산지 자격이 있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수출국의 영역 내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조는 완전생산기준(WO)을 의미한다. 제4조는 한·ASEAN FTA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CTH or RVC 40%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제5조에 PSR(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된다. 나머지 제6조는 역외가공(개성공단)에 관한 내용이, 제7조에는 누적 적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을 보면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즉 수출당사국에 의해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해외 임가공 감세

해외 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감세는 임가공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수입했던 물품이나 국내 생산 물품(내국물품)을 수출해 해외에서 가공·수리 등을 한 후 이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했던 물품과 가공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내국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법」상 해외 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해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고, 다른 하나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기 위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 그 대상이 된다.

만약 HS Code 10단위가 일치해야 한다면 가공 또는 수리의 결과가 ‘생산’에 의한 HS Code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즉 「관세법」상 임가공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수출할 때의 물품과 수입할 때의 물품 HS Code 10단위가 일치해야 되며, HS Code가 상이한 물품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율표상 제85류의 물품이나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되는 물품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수출입자가 주장하는 수출입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일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 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해외 임가공을 거친 것이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제조공정'이 수행됐다면,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등이 존재하는 공산품들보다는 1차산품 등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4.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은 한국產 미역을 태국에 수출해 임가공(미역 줄기 분리 및 절단 가공 등)을 진행해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 또는 한·ASEAN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다. 일단 재수입면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면, 해당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한국產'으로서 물품이 수입된다는 뜻이고 한·ASEAN FTA를 적용한다면 해당 물품이 가공이 이뤄져 '태국產'이 된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2) 해외 임가공 감세 적용대상 여부

질문에서는 재수입면세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답변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재수입면세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입돼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해당 물품이 태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이 이뤄졌기 때문에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임가공 감세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물품인 미역은 제85류에 분류되는 물품이나 제9006호의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에 해당돼야만 해외 임가공 감세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임가공 감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더해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차제품의 특성상 '동일성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유사 사례로는 ‘조심 2021관0055(2021.12.29.)’이 존재하는데, 해당 결정요지에서
는 쟁점물품은 수출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물품[냉동삼치를 냉동삼
치 필렛(fillet)으로 가공]이어서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외 임가공물품 감면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질문 사례는 미역 줄기 분리 및 절단 가공 등을 태국에서 진행해 동일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1차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산품에 대한 동일성 입증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1차산품에 대한 해외 임가공 감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의 조세심판 사례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다른 물품(냉동명태, 냉동오징어, 냉동게,
 냉동아귀, 간마늘 등)의 해외 임가공물품 감면세 적용 사례 및 해외 임가공물품 감면세와 관련한
 민원질의·회신사례를 제출된 것으로 보여 사안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답변상 관세청에서도 현품 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관장이 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다.

(3) 한·ASEAN FTA의 적용 가능성

한·ASEAN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해당 물품이 한국產인지 태국產인지, 원산지 미상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단 임가공이 진행된 미역의 원산지가 한국產이라면 FTA 특혜관
 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서는 제7조(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이어야 함을 규정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產이 아닌 계약상대국(태국產)이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관세법」상 면세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에 따라 당연히 원산지 미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FTA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물품이 한·ASEAN FTA상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ASEAN FTA에서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제3조의 완전생산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즉 수출당사국에 의해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제12류 분류 품목은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됐을 것(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을 규정해 제1212.21호에 분류되는 미역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으로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역에 대한 원산지 판정 시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완전생산기준 적용이 가능한데, 해당 품목의 HS Code(제1212.21호)는 제3조를 적용하든 제5조를 적용하든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획득되거나 생산’돼야만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제3조의 경우 예외사항이 없지만 제5조에 따른 완전생산기준은 일부 품목의 경우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됐을 것(wholly-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느 당사국(any Party)에서 생산돼도 완전생산이 이뤄지면 되기 때문에 누적(제7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예 : 제0304.62호, 제2106.90호).

그러나 제1212.21호는 제3조 및 제5조 모두 ‘수출국의 영역’에서의 완전생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누적을 적용할 수 없다. 제7조에 규정된 누적은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적용될 수 있는데, 제3조와 제5조에서 ‘수출국의 영역’이라고 규정한 이상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라고 해석돼야 하며 결국 누적 규정을 우선해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한·ASEAN FTA 원산지 규정 제5조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한 누적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나 제시된 제1212.21호의 경우 누적적용이 불가능해 ‘태국産’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에 대한 완전생산 입증서류를 갖추는 것도 어렵지만, 협정에 따라 누적규정 적용 가능 여부 등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 등 완전생산기준 적용 시에는 관련 협정을 상세히 확인하고 물품별 완전생산 입증자료를 철저히 구비(생산자 관련, 토지 또는 선박 관련 증빙, 유통경로 등에 대한 입증자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고철의 품목분류

고철은 어느 호에 분류되나요?

관세율표 제7204호에는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이 분류되며, 제7204.10-0000호에는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세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물품이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에 해당한다면 제720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주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제7204.1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 / 해외 전시품목 수출 절차 관련

해외 전시회를 위해 전시품목을 해외 반출할 예정입니다.

전시 중 판매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경우 거래구분 ‘85’, 결재방법은 ‘GN’으로 수출신고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출신고 당시 물품의 상태 등을 근거로 신고하는 것으로 수출 관련 환급을 받았거나 사후 관리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반드시 정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이 해외에서 판매됐을 경우 수출신고를 정정해야 외화 관련 수출실적 통계가 정확하게 집계되고, 업체의 지속적인 수출실적 관리도 이뤄지게 됩니다.

수출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하려고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외화 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해 유니패스 또는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 / 특수관계 간 물품 거래 시 과세가격 결정 관련

**통상 물품을 수입할 때 본사로부터 판매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데
이때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기초해 결정해야 하지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물품 가격은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을 봐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격이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제2~6방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관세평가 제2~6방법

제2방법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4방법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5방법 :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6방법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참고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 / 원산지표시

**제품에 원산지표시는 없고, '제조국 : 중국'으로만 돼 있는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해야 합니다.

제조국과 원산지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제조국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제조국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제조국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가 동일하면 양자를 통일해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31조의 적용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해설

박영작 | 관세청 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1. 들어가며

관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하되(「관세법」 제30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Alternative Method of Valuation)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대체평가방법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바, 이러한 원칙을 통상적으로 순차적용의 원칙¹⁾이라 한다.

이러한 대체평가방법 중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하게 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가격으로도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관세법」 제31조). 그리고 이러한 결정방법에 있어 동종·동질물품이란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의미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동종·동질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며, ①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돼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수 있다는 요건(「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과, ②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는 요건(「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한다.

이 중 ‘거래 단계’라는 용어의 의미는 실무적으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거치는 각각의 상업적 단계(Commercial Level)를 의미하는바, 이러한 상업적 단계의 차이는 특정 물품이 도매단계에서 판매되는지, 소매단계에서 판매되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업적 단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차이를 조정할 수 있으면 그 조정한 가격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6가지의 방법들을 각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로 칭하기도 한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위와 같은 법리의 구체적인 적용, 즉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 단계’가 같은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이다(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 참고로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쟁점 외에 감액경정처분을 독립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제35조 제2항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인지 여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등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주된 쟁점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 A의 국내 자회사로서, A가 국내 반도체 제조회사(이하 ‘국내 고객사’라 한다)에 판매한 제조설비를 설치·조립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나. A와 국내 고객사가 체결한 제조설비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은 A가 제조설비를 국내 고객사의 사업장에 이전·설치하고 성능을 검수하는 작업(이하 ‘스타트업 서비스’라 한다)까지 마치면 국내 고객사가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판매대금의 90%는 국내 고객사가 제조설비를 직접 수입해 수령한 때에, 나머지 10%는 최종 검수작업(사인오프)이 완료된 때에 각 지급하고, 무상보증기간(약 2년) 중 유지보수 서비스는 무상으로, 그 기간 도과 후 유지보수 서비스는 유상으로 각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A는 위 스타트업 서비스 및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원고와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A를 대신해 다음과 같이 국내 고객사에 스타트업 서비스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타트업 서비스는 제조설비 수입 전에 해당 제조설비의 설치장소를 확정하는 레이아웃(Lay-out) 작업과 제조설비 수입 후 이를 조립·설치하는 셋업(Set-up) 작업 및 설치된 제조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사인오프(Sign-off) 작업으로 이뤄진다. 원고는 제조설비 본체의 수입 전후로 위 각 작업에 필요한 부품(이하 ‘전후송품’이라 한다)을 A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후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 시 국내 고객사에 이전·설치했다. 원고는 스타트업 서비스 제공 시에는 국내 고객사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았고, A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만을 받았다.

반면, 원고는 무상보증기간 도과 후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시에도 전후송품과 동종·동질의

유상 A/S 물품(이하 ‘유상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사용했는데, 유상 수입물품은 A로부터 이전가격(Transfer Price, 다국적기업의 국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으로 수입했고,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시 국내 고객사로부터 부품교체 및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10.12.부터 2014.2.8.까지 A로부터 2,771건의 전후송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유상 수입물품의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국내 고객사는 같은 기간 A로부터 제조설비 본체를 직접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판매계약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마. 피고는 2014.2.17.부터 2014.3.7.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유상 수입물품은 이 사건 물품과 거래 단계가 다르고, 그로 인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바.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그에 대한 관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물품 중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된 물품은 국내판매가격에서 부대비용 7%를 공제한 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A의 해외표준판매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해 2014.10.10.부터 2016.3.2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관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합계 84억 6,970만 8,92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결정·고지했다(이하 ‘당초 결정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12.29. “A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제조설비 및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그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아. 피고는 재조사를 거쳐 2018.10.25. 원고에게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제조설비의 전체 거래가격을 제조설비 본체 및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계산 시 원고가 주장하는 Warranty(이하 ‘워런티’라 한다), 공통원가(이하 워런티와 함께 ‘워런티 등’이라 한다)는 제조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018.11.8. 원고에 대해 당초 결정처분을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등 합계 40억 7,346만 2,130원으로 감액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감액결정처분’이라 하고, 이로써 당초 결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감액결

정처분이 당초 경정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했다.

3. 판단 : 「관세법」 제31조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부분(유상 수입물품과 이 사건 물품의 거래 단계가 같은지, 나아가 그 거래 단계의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관세법」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해 제30조 및 제35조에서 여섯 가지 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중 「관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제2호에서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 거래 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해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나아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더라도, 두 물품 간에 거래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면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거래 단계가 같다”는 것은 해당 수입물품 거래와 동종·동질물품 거래의 상업적 수준(Commercial Level)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업적 수준은 도매단계, 소매단계와 같이 물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거치는 과정 중 특정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 두 거래에서 제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 등과 같이 각 거래 당사자가 맡은 역할이 다르다면 거래 단계가 같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과 유사 수입물품은 그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가격 차이를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판매계약은 A가 국내 고객사에 제조설비 본체와 이 사건 물품을 판매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스타트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국내 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으로서, 그 판매 목적물에는 제조설비 본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도 포함된다.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판매계약의 이행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그 과세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거래는 A와 국내 고객사가 체결한 이 사건 판매계약이다.

2) 원고는 판매자인 A가 구매자인 국내 고객사에 대해 부담하는 스타트업 서비스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판매계약의 독립한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가 A와 체결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은 이 사건 판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부수적 계약으로서 스타트업 서비스, 즉 이 사건 물품을 이전·설치하는 용역 등에 관한 거래일 뿐 이 사건 물품 자체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서비스계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과 유사 수입물품의 거래 단계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물품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판매자 A로부터 최종소비자인 국내고객사에 바로 판매된 반면, 유사 수입물품은 판매자 A로부터 원고에게 판매됐다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됐다.

4)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은 A가 거래 상대방인 국내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반면, 유사 수입물품의 가격인 이전가격은 A가 국외 특수관계인인 원고와의 거래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격 결정의 구조 등에 비춰 보면, 거래 단계 등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이 사건 물품과 유사 수입물품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취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거래 단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해설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동일한 물품이라도 개별 거래의 양상에 따라 거래가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관세법」에 따른 관세평가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규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바로 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와 국내 고객사 사이의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르면, A가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에는 스타트업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게 위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당시 국내 고객사에게 제공될 것이 당연히 전제돼 있어서 원고가 위 물품을 수령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와 A 사이의 거래가 종국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유상 수입물품은 원고가 국내 고객사에게 유상 수입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A로부터 유상 수입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유상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되면 이로써 원고와 A 사이의 거래는 종료하고, 이후 원고는 국내 고객사와의 별도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사에게 유상 수입물품을 제공하게 된다. 즉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서 원고는 사실상 A가 국내 고객사에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해 판매한 설비의 설치를 담당하는 것일 뿐이고, 이는 원고가 설비 설치 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고 유지·보수에 필요해 수입하는 유상 수입물품 거래와 본질적으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도식을 활용해 설명하자면, ‘A → 원고 → 국내 고객사’의 상업적인 단계가 예정된 상태로 국내 고객사가 가격을 지급해 수입된 이 사건 물품과 ‘A → 원고’의 상업적인 단계로 특수관계인 원고가 이전가격으로 수입한 유상 수입물품은 거래단계가 다르다는 의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래의 양태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 사건에서의 A는 국내 고객사에게 반도체 제조설비를 판매하고 그 일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므로, 이 사건 물품의 가치는 A가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가치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상 수입물품은 원고가 국내 고객사의 반도체 제조설비 수리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인바, 원고는 국내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대금 등의 과정에서 가격 협상, 견적, 발주 등을 통해 주도적인 지위를 갖고 판매가격을 정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경우 ‘A의 비용’으로 무상으로 수입한 다음 국내 고객사에게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유상 수입물품은 ‘원고의 비용’으로 수입한 다음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과 별건 유상물품은 거래비용의 부담 측면에서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 단계’의 해석을 최초로 실시한 해당 대법원의 판결은, 관세평가의 영역에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제9032호[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해설 및 쟁점사항 연구

김 명 섭 | 인천세관 FTA검증1과장

[해설 요지]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며 크게 (I)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variables)의 자동조절·제어기와 온도의 자동조절·제어기, (II) 전기적 양(quantities)의 자동조절·제어기와 비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제어기 등 2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I) 그룹은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 근거해 자동제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 측정장치, (B) 제어장치, (C) 작동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 그룹의 자동제어 기기는 또 다른 완전자동제어장치나 자동화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 그룹에는 ① 액체나 기체의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 ② 액면조정기(level regulator)나 액면제어장치(level controllers), ③ 습도조절기(humidity regulator), ④ 서모스탯(thermostat), ⑤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 등이 포함된다.

(II) 그룹도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 근거해 자동제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 그룹의 기기와 동일하게 (A) 전기식 측정장치, (B) 전기식 제어장치, (C) 작동장치를 필요로 하며 또 다른 완전자동제어장치나 자동화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I) 그룹의 기기와 다른 점은 (B)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봐 이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B)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반도체(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를 이용해 일반적으로 변조 전류 형태의 제어신호를 부여한다. 주의할 점은 전자식 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므로 소위 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자식 조절기는 제9030호의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전력과 같은 전기적 양뿐만 아니라 분당 회전수·토크(torque)·견인력(traction force)·깊이·압력·유량·온도와 같은 그 밖의 변량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액체나 기체의 자동제어 기기와 온도의 자동제어 기기는 (I) 그룹에 포함되고 다만 깊이·압력·유량·온도 등의 변량을 제어하는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봐 (II) 그룹에 포함한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가스자동압력제어기, 자동액면제어장치, 매노우스타트, 자동습도조절기, 서모스탯, 자동온도조절기 등이 있다.

[주요 쟁점사항]

제9032.10 소호의 용어는 ‘Thermostats’이며 이를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번역하고 있는데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번역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① 제9032호 해설서에 (D) 온도조절장치(thermostat)와 (E)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를 구분하고 있고, ② 제9032.2호의 5단위 소호 용어에 용도가 아닌 물품명으로 ‘매노우스 타트(manostat)’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와 분류원의 결정 중 ‘Temperature Controller’를 제9032.10 소호(thermostat)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제8537호와 제9032호와 경합이 되는 경우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32호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 따라 제9032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 전기식 측정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작 설계돼 있으며, ② 전기식 조절장치 내에 갖고 있는 희망치와 측정장치로부터 받은 측정치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③ 기동 장치·정지 장치·조작장치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작 설계돼 있어야 한다”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제9032호에서 규정한 변량의 주요 요소는 제9025호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 제9026호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제9027호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제9031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규정한 변량이라 할 수 있다.

제9032호(자동조절장치·자동제어장치)와 결합돼 제시되는 밸브장치의 분류는 자동조절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기와 결합된 밸브는 제8481호(밸브)로 분류되 무조건 자동조절기를 부속기기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주기계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제9032호나 제8481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I. 분류 체계

□ 호의 구성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를 분류하며 크게 (I)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variables)의 자동조절·제어기기나 온도의 자동조절·제어기기, (II)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제어기기와 비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제어기기 등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의 범주는 제90류 주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오로지(only) 이 두 개의 그룹에 속하는 기기에 한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I)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variables)의 자동조절·제어기기나 온도의 자동조절·제어기기 그룹에 대해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달려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desired value)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제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 측정장치, (B) 제어장치, (C) 작동장치를 필요로 하며 이 그룹의 자동제어기기는 또 다른 완전자동제어장치나 자동화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제90류 주 제3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해당 세번(주로 제84류, 제85류, 제90류)으로 분류한다.

(A) 측정장치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flow), 깊이(lavel), 압력(pressure)이나 온도(temperature)와 같이 조절해야 할 변량(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다. 측정은 주로 제9025호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 제9026호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variable)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의 기기와 때로는 변화에 감응되는 금속이나 바이메탈(bimetal)의 막대(rod)·팽창되는 액체를 함유하는 검출기나 벨로우(bellow)·부자(float) 등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B) 제어장치는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해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와 같은 (C) 작동장치를 제어하는 기기다. 다만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온도조절기 등은 어떤 예정치에 도달하면 스위치에 의해 직접 작동시킨다.

(C) 작동장치는 (B) 제어장치의 명령에 따라 (A) 측정장치에 의해 측정된 값이 희망치(desired value) 값이 되도록 예를 들어 펌프, 압축기, 밸브, 버너 등을 기동(starting)시키거나 정지(stopping)시키거나 조작(operating)시키는 장치(예 : 스위치)를 말한다.

이 그룹의 범위에 따라 다음의 기기를 포함한다.

① 액체나 기체의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 : 기체정류량장치(manostats)로도 불리며, 주로 압력감지기, 조절장치·제어회로,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돼 있다.

- ② 액면 조정기(level regulator)나 액면제어장치(level controllers : 액면(level)을 자동조정하는 기기로 플로트형(float-type)이 대표적이다. 보통 플루우트(감지)와 조정회로, 회로차단용 계전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 ③ 습도조절기(humidity regulator) : 습도조정장치(humidistat)로도 불리며,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기다. 보통 습기에 감응되는 소자, 조정회로, 스위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증기공급밸브(steam input valve)·급습기(humidifier)·제습기(de-humidifier)·팬(fan) 등을 자동적으로 제어한다.
- ④ 서모스탯(thermostat) :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기기이다, 주로 감지장치(바이메탈, 액체의 증기압력, 액체나 금속봉의 팽창, 전기저항기, 열전대 등), 예정온도설정장치(드럼, 디스크 등), 제동장치나 작동장치(레버 어셈블리, 스프링, 밸브, 전기스위치 등)로 구성돼 있다.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thermostat)는 주택이나 그 밖의 건물 내 오븐(oven)·조절기구·보일러·물 가열기·냉장장치·굴뚝이나 연도·증기장치나 캐비닛이나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장치 등 광범위하게 온도조절용으로 사용한다.
- ⑤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 : 전기식 가열장치의 온도를 설정·유지하는 데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감지장치인 바이메탈스트립(bi-metal strip), 전력회로 개폐용 스위치로 구성된다. 바이메탈의 온도변화 상태에 따라 개폐를 반복하여 열 요소(heating element)가 계속적인 작동을 하게 한다.
- ⑥ 오븐(oven) 통풍 자동조절기(oven-draught regulator) : 중앙난방장치나 공기조절장치 등에서 온도·압력 등에 의하여 흡입되는 공기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다. 온도나 압력 감지장치, 제어장치, 전력회로 개폐장치(예 : 릴레이,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II)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제어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제어기 그룹에 대해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 “작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그룹의 자동조절·제어기기(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는 전기적이거나 비전기적인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측정해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으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 제어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제어기기에는 (I) 그룹의 액체나 기체의 자동조절·제어기와 온도의 자동조절·제어기기를 제외하며, (B)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제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 그룹의 기기와 동일하게 (A) 전기식 측정장치, (B) 전기식 제어장치, (C) 작동장치를 필요로 하며 또 다른 완전자동제어장치나 자동화 설비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제90류 주 제3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나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해 해당 세번(주로 제84류, 제85류, 제90류)으로 분류한다. (I)그룹의 기기와 다른 점은 (B)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도 이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점이다.

(A) 전기식 측정 장치는 감응장치·변환기·저항탐침(resistance probe)·열전대(thermocouple)

등을 이용해 조절되는 변량(variable)의 실제 값을 측정해 비례되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

(B)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반도체(트랜지스터)나 집적회로를 이용해 일반적으로 변조 전류의 형태로 제어신호를 부여한다. 주의할 점은 전자식 조절기(electronic regulator)는 전부 전기식 원리로 작동하므로 소위 전자기계식(electro-mechanical)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자식 조절기는 제9030호의 볼트수·암페어수·주파수·전력과 같은 전기적 양뿐만 아니라 분당 회전수·토크(torque)·견인력(traction force)·깊이·압력·유량·온도와 같은 그 밖의 양(量)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액체나 기체의 자동제어 기기와 온도의 자동제어 기기는 (I) 그룹에 포함되고 다만 깊이·압력·유량·온도 등의 변량을 제어하는 전기식 조절·제어 장치가 별도로 제시되는 경우 불완전 자동조절기기로 봐 (II) 그룹에 포함한다.

(C)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는 일반적으로 접점·스위치나 회로 차단기·방향전환 스위치나 간혹 단전기 스위치가 사용되며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작동기(actuator)는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예 : 조정가능 클램프(clamp)는 제8425호, 전동이나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는 제8481호, 전자기식 포지셔너(positioner)는 제8505호 등].

참고로 자동조절기가 작동기와 결합한 경우에는 자동조절기는 일반적으로 부속기기이므로 전체를 묶어 통칙 제1호나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세번(주로 제84류, 제85류, 제90류)으로 분류한다.

(A) 전기식 측정장치, (B) 전기식 제어장치, (C) 작동장치가 같이 제시돼 자동조절·제어기기(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그룹으로 분류하고 만일 이 그룹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에는 (1) 전기식 측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제9025호·제9026호·제9030호에 분류하며, (2) 전기식 조절장치는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로 이 호로 분류하며, (3)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는 일반적으로 제8536호에 분류한다(스위치·계전기 등).

자동조절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식·압축공기식·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variable)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 작동기는 아크 노(arc furnace)의 전극 간 간격을 조정하는 클램프(clamp)·보일러·노(arc furnace)·펌핑기계 등에서 물이나 증기의 흡수를 조절하는 전동밸브가 있다.

이 호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는 가스자동압력제어기, 자동액면제어장치, 매노우스타트, 자동습도조절기, 서모스탯(thermostat), 자동온도조절기 등이 있다.

● 제9032호의 다양한 기기 ●

매노우스타트(기체정류량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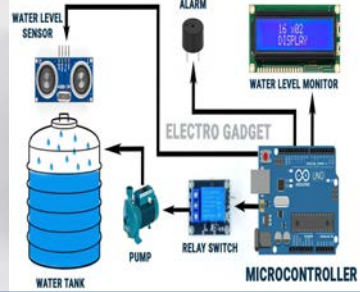


Artisan Technology Group

가스자동압력제어기



자동액면제어장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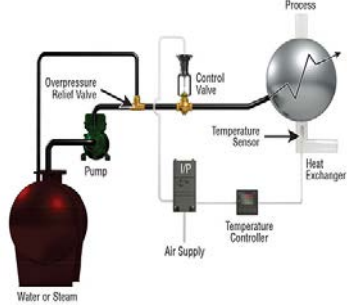
자동습도조절기(센서 포함)



엔진 서모스탯(thermostat)



자동온도조절시스템 구성도



통풍 자동제어기



movavi

전자식 온도제어기



KETOTEX

자동온도조절기(센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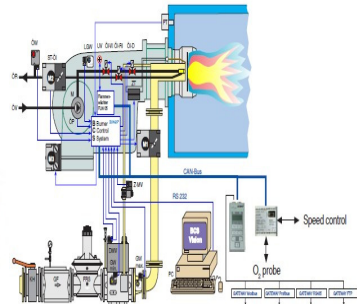
디지털 습도조절기



디지털 압력조절기



가스자동제어시스템 구성도



* 자동제어-조절기와 결합된 특정 기계의 구성도는 기능단위기계 분류 규정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

□ 제9032 소호의 구성

제9032 소호는 거래량이 많은 ①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② 매노우스타트(자동압력제어기)를 특정 소호로 규정하고, 그 밖의 기기 중 작동 방식에 따라 ③ ‘액압식이나 공기식’과, ④ 그 밖의 것으로 6단위 소호를 세분화하고, ⑤ 부분품과 부속품을 소호로 규정해 총 6개로 세분화한 구조다. 소호 국문 번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Ⅲ. 주요 쟁점사항’에서 상세히 다룬다.

소호의 용어를 간단히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 제9032.10 - 온도조절장치(thermostat);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는 제외한다.
- 제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기체정류량장치로도 불리는 압력자동제어·조절기
- 제9032.8 - 온도조절장치(thermostat)와 매노우스타트(manostat)를 제외한 그 밖의 기기
- 제9032.81 - 그 밖의 기기 중 액압식이나 공기식
- 제9032.89 - 그 밖의 기기 중 기타(액압식과 공기식을 제외한다)
- 제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 제9032호 HSK 및 바(-)의 구성

제9032.10 소호의 경우 HSK 7단위를 가변식과 고정식으로 세분화했으나 소호의 용어 번역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잠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제9032.8 소호의 경우 제8481호(밸브) 소호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한 소호 범주 해석의 논란과 연관돼 있다. 제9032.81(액압식이나 공기식의 그 밖의 기기) 소호 하위단위의 HSK는 무세인 반면 제9032.89(그 밖의 기기) 소호는 세율이 높다.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사용하는 ‘유량자동조정기와 조절기’가 어느 소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차가 난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반도체 산업의 세율 불균형 해소와 항공산업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세분화했다.

II. 관련 규정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를 분류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6부 주 제4호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 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제16부 주 제3호와 제4호 관련 (Ⅲ)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의 범주 해설

-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 압력계·온도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 장치식 스위치(switch)·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 제8481호의 용어

-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 제8504호의 용어

-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

○ 제8535호의 용어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36호의 용어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제8537호의 용어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제90류 주 제3호

-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

○ 제90류 주 제7호

-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제9025호의 용어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 제9026호의 용어

-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 제9027호의 용어

-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제9031호의 용어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III. 주요 쟁점사항

제9032호의 분류와 관련해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9032 호호 국문 번역의 문제점은?
- 2) 제8537호와 제9032호와의 구분 포인트는?
- 3) 제9032호의 변량(variable)의 주요 요소는?
- 4) 제9032호(자동조절장치·자동제어장치)와 결합돼 제시되는 밸브장치에 대한 바른 분류는?
- 5) 제9032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1) 제9032 호호 국문 번역의 문제점은?

소호의 분류는 통칙 제6호(HS 5단위, 6단위 결정규정)에 따라 분류하며, 통칙 제6호에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小號)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小號)의 용어와 관련 소호(小號)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수준(동일수준)’의 의미에 대해 해설서에는 “하나의 호(號) 안에서 둘 이상의 5단위 소호의 비교우위를 고려하는 경우, 주어진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은 그 고려 대상인 5단위 소호들의 본문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구체적인 하나의 5단위 소호가 선정되고 그 소호 자체가 다시 세분되는 경우에,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만, 6단위 소호들의 본문을 고려하여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5단위가 6단위보다 상위법이므로 5단위끼리 우선 비교해 5단위를 결정하고 이후 6단위끼리 비교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는 의미다. 또 비교 시에는 대상 물품에 대한 특성이나 유사성을 기초로 평가해야 한다.

우선 제9032.10 소호의 용어는 ‘Thermostats’이며 이를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사실 번역의 오류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 해설서에는 (D) 온도조절장치(thermostat)와 (E)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를 구분하고 있다.

온도 조절용 기기로 번역하면 (E) 온도조절기(temperature regulator)까지 포함되므로 물품명인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번역해야 맞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9032.2호의 5단위 소호 용어에 용도가 아닌 물품명으로 ‘매노우스타트(manostat)’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하자면 제9032호의 5단위 소호끼리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성이나 유사성이 같아야 하는데 제9032.1호의 5단위 소호는 용도(온도조절용)에 따라 분류하고 제9032.2호의 5단위 소호는 물품명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는 통칙 제6호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9032.20 소호의 용어와 해설서의 구분 해설을 근거로 제9032.10 소호의 용어는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아닌 ‘온도조절장치(thermostat)’로 번역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와 분류원 결정 중 ‘Temperature Controller’를 제9032.10 소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당연하게 제9032.8호의 5단위 소호는 ‘온도조절장치(thermostat)와 매노우스타트(manostat)’를 제외한 그 밖의 기기(물품)’다.

●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의 제9032.10 소호 분류 사례 ●

시행기관	201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9032.10-1090호
경합 세번	제8537.10-9000호, 제9032.10-1090호, 제9032.89-9090호
품명	UB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 PCB assy
	○ 물품 개요
	- PCB 기판 위에 LCD 표시반, Incar sensor(실내 온도 측정), Micro controller, Tact switch, 커넥터 등이 결합된 차량용 공조기 컨트롤러
물품 설명	○ 제시된 물품 형태 및 기능
	- 주요 기능
	① 자동 제어 : 각종 센서(내기, 외기, 일조량 센서 등)로부터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Micro controller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액추에이터로 제어 신호를 보내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조절)시켜 줌

② 수동 제어 : 기본적 기능, 자동 모드 상태에서도 각각의 개별 스위치를 조작해 기기 ON/OFF, 온도, 바람세기 등을 조절(제어) 가능, 스위치 버튼은 수동으로만 작동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85류와 제90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90류 주 제7호 가목에 해당되는 온도 자동조절장치에 대해 "완전한 자동제어장치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A)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을 측정하는 장치,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D) 기동장치·정지장치 또는 조작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결정 사유

본 건 물품은 각종 센서(차량 내·외부 온도, 일조량 센서 등)로부터 전달된 값을 바탕으로 Micro controller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액추에이터(모드 모터, 내/외기 모터, 블로어 모터 등)로 제어 신호를 보내, 실내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자동조절)시켜주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3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 건 물품은 최적의 운전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주기능에 해당함으로 '전기제어용 보드' 등이 분류되는 제8537호보다는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9032호가 타당할 것임.

또한 본 건 물품은 설정된 실내온도에 맞게 각종 센서에서 입력된 값을 받아들여 자동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9032.10호의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 제2호 가목, 제9032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제9032.10-1090 호에 분류함.

2) 제8537호와 제9032호와의 구분 포인트는?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제8537호로 분류되는 주요한 기기로 ①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②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③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programmable controller)를 예시하고 있다. 이들 기기는 기본적으로 제어장치를 갖추고 있고, 제90류의 측정장치(감응장치)와 결합한 것도 포함되므로 제9032호의 자동전기제어장치와 구별이 어렵다.

단순한 논리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32호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좀 더 깊은 논리로 제90류 주 제7호 나목(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 범주 규정)의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즉 ① 전기식 측정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작 설계되었으며, ② 전기식 조절장치 내에 갖고 있는 희망치와 측정장치로부터 받은 측정치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를 ③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작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 제90류 주 제3호(기능단위기기 분류규정)을 적용한

종이 제조 시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한 WCO 분류 사례 ●

결정 세번	제9032.89호
품명	종이 제조 시 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물품 설명	일반적으로 다음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 (i) 스캐너[하나 이상의 감지기(sensor)와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는 좌우이동형 감지기 두부(sensor head)를 갖춘 것으로서, 센서의 기능은 제품을 측정하고 제조공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임] (ii) 공정 지원 스테이션[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스캐너와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연락기능을 수행함] (iii) 제8471호의 중앙컴퓨터장치[측정치와 설정치를 비교하며 종이의 기술적 규격(예 : 두께,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 작업장치에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제어 장치임] (iv) 조작실(operating station)[비디오 디스플레이와 키보드를 갖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임] (v) 프린터/플로터[역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임]
	통칙 제1호(제90류의 주 제3호) 및 제6호

3) 제9032호의 변량(variable)의 주요 요소는?

제9025호의 용어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를, 제9026호의 용어에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제9027호의 용어에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제9031호의 용어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기들이 특정 장치가 기계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자동제어장치와 결합돼 제90류 주 제7호 가목(변량의 자동제어용이나 온도 자동제어용 기기의 범주)을 충족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9032호로 분류한다.

또한 제9032호에서 규정한 변량의 주요 요소는 제9025호, 제9026호, 제9027호, 제9031호에서 규정한 변량이라 할 수 있다.

4) 제9032호(자동조절장치·자동제어장치)와 결합돼 제시되는 밸브장치에 대한 바른 분류는?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 기기는 전기적 조절에 의해 밸브와 같은 장치를 원격 조절하는 데 사용한다. 따라서 자동조절용 기기가 밸브와 같이 결합돼 있거나 구성된 경우 품목분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제9032호 해설서를 보면 압력감응기, 조절장치·제어회로,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된 압력제어기나 조정기는 제9032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반면 제8481호에 규정한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에 대한 해설서를 보면 모세관식의 자동온도조절 소자를 접속시킨 밸브 등은 제8481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16부 총설에 부속기기의 범주에 대해 “주기계와 함께 제시하는 부속기기[예 : 컨트롤패널(control panel)·자동조절기]로서 보통 주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 기계를 제어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16부 총설에 따르면, 자동조절기는 일반적으로 부속기기에 해당하므로 자동조절기와 결합된 밸브는 밸브로 분류해야 한다는 논리적 유추가 가능하므로 제16부 주 제3호 또는 제4호,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8481호(밸브)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자동조절기를 부속기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제9032호 해설서에 예시한 ‘압력제어기나 조정기’처럼 자동제어기가 주기계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제9032호로 분류하듯 밸브와 결합된 자동조절기도 본질적 특성이 밸브로 판단되어야만 제8481호로 분류해야 한다.

● 밸브가 결합된 자동조절장치를 제9032호로 분류한 사례 ●

시행기관	2023년 제7회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공개 여부	공개
결정 세번	제9032.20-0000호
경합 세번	제8481.80-1030호(밸브), 제8486.90-2040호(반도체 장비 부분품), 제9032.20-0000호(매노우스타트)
품명	ADAPTIVE EXHAUST THROTTLE VALVE
물품 설명	○ 물품 개요 - (개요) 반도체 기판 위에 박막을 만드는 CVD 공정*에서 진공펌프와 챔버 사이에 위치해 챔버 내의 가스 배기 시 관로를 열고 닫음으로써 배기압을 조절하는 ‘스로틀 밸브(throttle valve)’와 챔버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컨트롤러(controller)가 일체**로 돼 있음. *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마이크로 단위의 전도성 박막을 증착하는 공정 ** 해당 제조사(제니어스) 홈페이지에 ‘GT-800 Controller(Intgrated type)’ 소개돼 있음. 밸브와 압력 조절기를 일체형으로 만듦으로써 공간 활용도를 높임.

- (작동원리) 센서(미제시)에서 관로의 압력을 실시간 측정해 본건 물품으로 전송하면, 본건 물품은 전송한 현재 값과 설정된 기준값을 비교해 기준값이 현재보다 크면 밸브를 닫고, 작으면 밸브를 열어 챔버 내부의 압력을 자동으로 일정하게 조절하게 됨.
- (용도) 챔버 내부는 증착과정 중 화학반응이나 플라즈마에 의해 압력이 수시로 변화하게 되는데, 챔버 내부의 압력값 유지는 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관 중간에 밸브와 컨트롤러를 달아 관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줌.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반도체 CVD 증착 공정에서 진공펌프와 챔버 사이에 위치
※ CVD(박막증착공정)은 고체의 물질을 기상상태에서 100nm 이하의 박막(film)을 코팅하는 것으로, 챔버 외에 로터리 펌프와 RF 발생기, 매칭네트워크 유닛, 제어반(전체), MFC(가스 유량조절기), 자동압력조절기, 스로틀 밸브 등으로 구성돼 있음.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도체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제9032.20호에 ‘매노우스타트’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 제어용 기기’가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후략>”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사유 또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며,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 온도 등 조절해야 할 변량(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B)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해 (C)의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정지장치·조작장치(operating device)를 예시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A)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 : 이것은 기체정류량장치(manostats)로도 불리며, 주로 압력감응기·지시된 압력과 조정해야 될 압력을 비교하는 조절장치·제어회로를 조작시키는 전기접점이나 작은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 <중략> … 이러한 압력 조정기는 제8481호의 감압밸브와 다른 것이다[때때로 ‘압력 조정기(pressure regulator)’로 불린다]”고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에는 변화량을 측정하는 센서 등이 없으나,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챔버 내부의 변화량을 실시간으로 받아 지정된 희망값과 비교해 챔

버 내부의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32호의 범주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건 물품을 제9032.20호의 ‘매노우스타트(Manostats)’로 볼 수 있는지 보면, 제9032호의 해설서에 (A) 압력제어기(pressure controller)나 조정기(regulator)는 모터 펌프나 압력 탱크에 부착된 콤프레서(compressor)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문헌상에도 ‘인클로저(enclosure) 내부의 일정한 압력을 자동으로 유지하는 장치(출처 : Merriam Webster,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계열)’로 ‘매노우스타트’를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클로저 형태의 챔버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자동으로 유지하기 위한 본건 물품은 제9032.20호의 ‘매노우스타트’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매노우스타트(manostat)로 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20-0000호에 분류함.

5) 제9032호와 경합되는 그 밖의 물품들은?

제8504호의 용어에 ‘변압기·정지형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전자장비용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조정기와 결합된 정류기로 구성된 전원공급기를 예시하고 있다. 제8504호의 전원공급기는 전기를 유용하게 변환해 사용하기 위한 정지형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제8504호로 분류한다.

제8535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두 도체 간의 전위차나 예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도체와 어스(earth) 간의 전위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전압제한기(voltage limiter)’를 예시하고 있으며,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켜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전기자석식의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를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압제한기나 과부하 방지기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 제8535호나 제8536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기적 양(量)의 실제 값(actual value)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해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값(desired value)으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동전압조정기는 불완전한 전기식 조절장치이므로 제16부 주 제1호 타목과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 따라 제9032호로 분류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안구세정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안구세정제는 눈에 먼지, 화장품 등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를 깨끗이 세척하는 제품이다. 세정제를 사용하고 나면 눈이 시원해지고 사용 후 나오는 이물질을 보면 눈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절로 난다.

하지만 안구세정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눈의 천연 보호막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어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눈에서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습윤·항균 물질 분비량이 적어지고, 일부 성분이 눈물 분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안구세정제의 품목분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글리시리진산이칼륨,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타우린, 비타민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컵과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ml)으로 제3307.90-9000호로 신고했다.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용법·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30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소매포장의 형태도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제3307호 총설에서는 ‘(b) 의약품 조제품으로서 부차적으로 향료, 화장품류나 화장용 품류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물품(제3003호·제3004호)’을 제외하도록 돼 있어 제300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현품의 포장 상태, 성분, 효능·효과 등의 표기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본 물품은 현품에 의약품 표시 및 효능·효과·용법·용량·주의사항 등이 표시된 의약품에 해당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OTHER	3307.90-9000 (C 6.5%)	Medicament	3004.90-9900 (A 8%)

양질의 단백질 '유장'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유장(乳漿 : whey)’이란 우유에서 지방과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은 천연 성분의 액체다. 유장은 ‘유청(乳淸)’이라고도 부르며,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나서 남은 부산물이다.

예전에는 특별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비료로 쓰거나 건조해서 사료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취급이 곤란해서 그냥 버리기도 했다. 미국 같은 대규모 낙농업 국가에서는 치즈를 만들고 유지방을 걷어내고도 남은 유장을 버리는 양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장이 하수에 섞여 쏟아지자 하천 생태계가 오염되고 수질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결국 유장 배출량 규제를 한 이후로는 더 이상 유장을 버리지 않게 됐다.

최근 서울에서 ‘9차 유청 단백질 포럼’이 ‘진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이란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유장이 달걀·소고기보다 면역력 강화를 돕는 최고의 단백질이라고 주장했다. 유장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한 완전 단백질이며,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인 류신이 다량 함유돼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많은 양의 열량을 섭취하기 어려워 유장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관세율표에서 밀크는 제0401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 … <후략>)’ 또는 제0402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 <후략>)’에 분류된다.

그러나 밀크로부터 분리된 유장은 제0404호 ‘유장(Whey)(농축한 것인지 … <중략> …)’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분류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4호에서는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고체 상태(냉동한 것을 포함한다)일 수도 있고, 농축(예 : 가루 모양)이나 보존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 제0404호 해설서 제외규정 (e)를 참조하면, 유장단백질의 농축물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0% 이상의 것은 제3502호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 <중략>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에 분류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87호_2024.6.17.

최신개정법령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입법예고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962호, 2024.6.1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71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표시 사항 확인 또는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검사하도록 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실태조사는 구매자의 특성, 구매·사용실태, 소비자 피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범위로 하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등을 추가하고, 축산물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무작위표본검사 및 정밀검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한다.

제44조의6 및 제44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시사항 등 확인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표시사항과 사이버물 등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2. 분석적 검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을 통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포함 여부 검사

제44조의7(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법 제25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 나이 등 구매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 구매실태에 관한 사항
 3. 섭취하는 제품의 종류, 섭취량 등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인한 피해경험, 피해유형 등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별표 5 제1호 전단 중 “축산물(특별위생관리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축산물, 동물성 식품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이하 이 표에서 “축산물등”이라 한다)”로, “축산물의 종류”를 “축산물등의 종류”로,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을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유사한 축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등”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해외작업장”을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부터 라목 까지 중 “축산물”을 각각 “축산물등”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 중 “축산물의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을 “축산물등의 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을 “축산물등의 수입허용”으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본문 중 “축산물”을 “축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출국별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축산물”을 “축산물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을 “수출국·수출지역별 또는 축산물등별”로 한다.

별표 8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별표 9 제2호가목1)부터 15)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1)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2)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의 원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맞는 향료, 1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9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또는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원료로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가목1)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가목2)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의 원료,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맞는 향료, 가목13)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으로서 수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수입식품등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된 실적(매년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고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한 사유 없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3 II. 개별기준 제3호다목1)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식품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정보 Food Information	생산품목 Type of food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유형 Types of food set by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pursuant to Articles 7 and 9 of the Food Sanitation Act and Articles 14 and 15 of the Functional Health Foods Act) [] 농산물 Agricultural products
--------------------------	----------------------	---

		[] 가공식품(동물성 식품 제외) Processed foods excluding animal products [] 기구·용기·포장 Apparatus, or containers and packages [] 수산물 Fishery products [] 식품첨가물 Food additives [] 건강기능식품 Functional health foods [] 동물성 식품 Animal products
--	--	---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마목의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며, 같은 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자목의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바목 및 자목의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진균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14일[조제유류를 제외한 냉장보관 축산물 7일(리스테리아 또는 다이옥신 검사대상 10일)], 정밀검사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영업허가·신고 또는 등록증	
2. 품목제조보고서(기구·용기·포장의 경우에는 검사성적서를 말하며,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된 영업소에 납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말합니다)	
3.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4. 수출식품등 영문검사성적서 원본(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하여 영문검사성적서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식품이력정보 제공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5호, 2024.6.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연가스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kg), 발전용 외 1톤당 16,730원
(16.730원/kg)

나. 2025년 7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kg),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
(24.242원/kg)

제8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탄 : 1톤당 62,283원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9, 2024.6.11.)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프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9.78~31.28%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프방지 관세율(%)
중국	1.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74
	2. 탄흥(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80
	3. 준마 푸토(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4. 키우티 준마(Cong Ty TNHH Một Thành Viên Kieu Thi Junma)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5. 옌바이(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9.78
	6. 룡자(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28
	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티티케이(TTTK Co. Ltd) 나. 티티티케이 타이응우옌 (TTTK Thai Nguyen Co. Ltd) 다. 티티티케이 트레이딩(TTTK Trading Co. Ltd)	11.46
	8. 그 밖의 공급자	13.94

※ 비교 : 제8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8, 2024.6.1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4.73~38.1%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 빈톨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7.82
	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73
	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10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6. 그 밖의 공급자		10.67

※ 비교 : 제8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0, 2024.6.1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 1.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일 것
-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7.15%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웨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가.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나.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3.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4.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7.15
	5.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15
	6. 그 밖의 공급자	7.15

※ 비교 : 제8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31, 2024.6.11.)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3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프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프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또는 제4412.3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 다. 덤프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3.30~27.21%로 함.

공급국	공급자	덤프방지 관세율(%)
중국	1. 웨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5.14
	2. 난닝 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0
	3. 산둥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4.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가.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	
	나.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27.21
	5.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 리안윤강안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7.21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7.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웨이강 웨이추양(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나. 웨이강 지에셴(Guigang Jiesheng Wood Co., Ltd.) 다. 광시 링산 웨이추양(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27.21
	8. 그 밖의 공급자	18.85

※ 비고 : 제8호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공고 제2024-76호, 2024.6.13.)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관할세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원센터에 따라 세관의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그 밖”을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그 밖”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행정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을 “행정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5조 제7항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17조의2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의 과단위 사무분장)”을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 제1항 및 제17조의2 제3항을 분장한다.

제2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 제1항 및 제17조의2 제3항을 분장한다.

제34조 제6항 중 “2명(6급 1명)”을 “3명(6급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평택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서산시·홍성군·태안군

별표 1 중 천안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예산군·당진시(평택당진항 해상 및 부두지역·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은 제외한다)

별표 3 중 “천안세관”을 “평택세관”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798”을 각각 “4,81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 “35”를 “34”로 하고, 식품위생주사 “1”을 “2”로 하며, 관세주사보 “891”을 “893”으로 하고, 관세서기 “1,007”을 “1,010”으로 하며, 관세서기보 “768”을 “77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08”을 각각 “4,822”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 “35”를 “34”로 하고, 식품위생주사 “1”을 “2”로 하며, 관세주사보 “912”를 “914”로 하고, 관세서기 “986”을 “989”로 하며, 관세서기보 “688”을 “691”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bjs0712@korea.kr
- 전화번호: 042-481-7682
- 팩스: 042-481-76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042) 481-7682~3, 팩스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4-5, 2024.6.11.)

1. 제명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 「관세법」 제116조의6과 동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신설로 납세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 이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대상 및 과세정보 전송·철회 방법 등의 관련 절차를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고시의 목적(적용범위) 확대(제1조)
 - (기존) 통계 작성·교부(§322) 및 과세정보 제공(§116) 관련 사항
 - (개선)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116의6) 이행 관련 사항을 추가
- 과세정보 전송 대상 신설(제38조 및 별표 5)
 - ※ 현재 별표 5(과세정보 전송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해당자는 없는 상황으로, 향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등재 예정
- 과세정보 전송 요구 및 철회 방법 신설(제39조)
 - 통계교부대행자가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전송 요구 또는 철회 요청할 수 있으며, 철회 요청의 경우 서면으로도 가능
- 과세정보 전송 요구의 처리방법 신설(제40조)
 - 통계교부대행자는 과세정보 전송·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며, 기망·협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 가능
 - 통계교부대행자는 전송 요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자와 항목, 주기 등을 사전 협의하여 플랫폼에 반영 가능

□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시의 협의 의무 신설(제41조)

- 통계교부 대행자가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과 협의해야 함

□ 준용규정 신설(제42조)

- 신설된 제5장(과세정보의 전송 요구)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통계 자료 제공)을 준용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조문번호	법령위임근거 조항
제38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제1항 제2호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를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
제39조 제1항	「관세법」 제116조의6 제5항 제4호는 관세청장이 전송 요구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
제39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제6항 제3호는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관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제40조 제1항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제7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해당 시행령의 내용을 쉽게 풀어쓴 것임
제4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제4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하는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사전 협의가 가능하도록 허용
제41조	과세정보 전송 업무는 「관세법」 제116조의6 제8항에 따라 대행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관리감독이 필요

5. 시행일자 : 2024. 7. 1.

6. 의견제출 방법

- 1)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2) 담 당 자 : 이민영 사무관(042-481-7845), 박상용 주무관(042-481-1118)
- 3) 제출기한 : 2024. 6. 25.
- 4) 제출방법 : E-mail(bobbowl@korea.kr), FAX(042-481-7769)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고시 제2023-42, 2023.6.26.)

1. 제명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2. 개정사유

- 우편물 신고서 체계가 개편되기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제10조 제6호) 및 의약품(제10조 제7호) 수입신고 시행 시기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2호(2023. 06. 26.))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4. 7. 1.부터”를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로 한다.

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부칙 <제2023-42호, 2023.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202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42호, 2023.0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는 <u>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u> 시행한다.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수입신고에 대한 시행시기 조정
<신설>	부칙 <제2024-00호, 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자 : 2024. 7. 1.

6. 의견제출 방법

- 1) 제출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2) 담당자 : 류승하 사무관(042-481-7852), 고상현 주무관(7918)
- 3) 제출기한 : 2024. 6. 23.
- 4) 제출방법 : 이메일(k1021021@korea.kr), 팩스(042-481-7839)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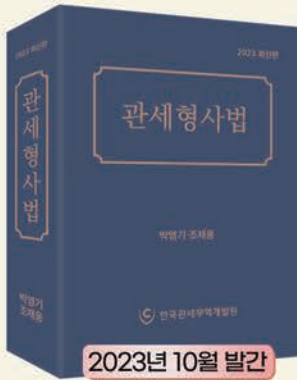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